

발주기관 및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기준의 준수비율 분석

Compliance Status of OSH Expense Regulation by Client Types and Project Amount

이 규 진*

Yi, Kyoo-Jin*

*Department of Civil, Safety,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nseong,
Gyeonggi-do, 456-749, Korea*

Abstract

Legislated in 1988,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Criteria, has been giving a positive impact on improving the safety of construction sites. Previous researchers have been insisting that the rate is not enough to ensur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construction site. However, according to Korea Gallup's survey of more than 1000 construction sites in 2012,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large number of them did not comply with the criteria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This study analyses the completed works cost statistics of construction projects to figure out the compliance rate of the criteria.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ompliance rates are substantially low in most types of clients and the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in future research on appropriate safety and health expenses rate and on improving compliance rate of the criteria.

Keywords : safety management, construction safet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건설업은 옥외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작업장소의 변화가 많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편이다. 안전시설물도 공사현장마다 매번 새로이 설치해야하고 근로자의 이동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1988년 제정되었으며, 이는 공사의 종류

와 대상액(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대상액에 각각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 이를 계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과 무관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이 적정 요율을 연구한 사례이며, 현행 요율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소 부족하므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1,2]. 즉 기존 연구자들은 현재의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한국갤럽에서 1000여 군데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상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3]. 즉 대부분의 현장에서

Received : August 4, 2014

Revision received : August 22, 2014

Accepted : September 16, 2014

* Corresponding author : Yi, Kyoo-Jin

[Tel: 82-31-670-5285, E-mail: helden@hknu.ac.kr]

©2015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All rights reserved.

현행 안전보건관리비 요율 기준에 못 미치는 액수를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업에서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를 조사하였으므로 정확히 어느 정도 금액이 공사현장에서 실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매년 대한건설협회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시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하면 그 비율을 비교적 정확히 산정해 볼 수 있다. 완성공사원가통계에는 각각의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통계가 공사 규모 및 발주자별로 분류하여 집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 기준 준수 실태를 기존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완성공사원가통계상의 계정과목 중 안전관리비 항목을 법정 기준과 비교하고 공사규모 및 발주자별로 비교분석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기존 문헌 및 연구를 고찰한다. 완성공사 원가통계에서 나타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준수 실태에 대해 연도별 추세를 분석하고 공사규모 및 발주기관별로 비교한다. 완성공사원가통계의 공사종류별 분류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상의 분류와 다르므로 일반건설공사(갑)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해당 공사종류가 전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계상요율이 다른 공사종류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 기준의 실제 준수율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수치보다 낮을 수 있다. 또한 분석 대상 통계가 2012년 이전 값이므로 현행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의 요율을 적용한다.

2. 기존연구 및 현행기준의 고찰

2.1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서는 건설공사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Table 1과 같이 고시하고 있다[4,5]. 이에 따라 건설공사에서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도급계약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한다.

Table 1. Safety and health expense estimation rule for construction projects (until 2013)

effective date	type of construction	project amount			
		less than 0.5 billion won	between 0.5 and 5 billion won	ratio(X)	base
until 2013	general construction work (A)	2.48(%)	1.81(%)	3,294,000	1.88(%)
	general construction work (B)	2.66(%)	1.95(%)	3,498,000	2.02(%)
	heavy construction work	3.18(%)	2.15(%)	5,148,000	2.26(%)
	railway construction work	2.33(%)	1.49(%)	4,211,000	1.58(%)
	special and other	1.24(%)	0.91(%)	1,647,000	0.94(%)
from 2014	general construction work (A)	2.93%	1.86%	5,349,000	1.97%
	general construction work (B)	3.09%	1.99%	5,499,000	2.10%
	heavy construction work	3.43%	2.35%	5,400,000	2.44%
	railway construction work	2.45%	1.57%	4,411,000	1.66%
	special and other	1.85%	1.20%	3,250,000	1.27%

2.2 기존 연구의 고찰

안전관리비와 관련된 연구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그중 공중별 위험지수를 적용한 표준 안전관리비의 확보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가격 기준이 아니라 예정가격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공중별 원가분석에 따라 안전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야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6]. 이와 함께 공사 원가상의 안전비용을 합리화하여 공사 항목별 적정단가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7].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안전관리비 요율이 낮다는 전제 하에 이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건축공사의 경우 아파트 1.63%, 빌딩 1.69%, 토목공사의

경우 도로 1.15%, 발전소 등은 1.83%, 지하철 등은 2.22% 정도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8].

Son[9]은 국내외 규정과 관련 연구 논문, 연구보고서, 기타 자료 등을 비교하고 안전관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요율 산정 모형으로서 공사금액에 의한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Son[10]은 토목공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공사특성 등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적정 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식을 제시하였다. 이는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11].

Lee[12]는 현행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기존 통계자료들의 분석과 현행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을 재검토를 통하여 안전보건관리비의 개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Oh et al[1]과 Ch[2]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로 실태조사를 하여 현실적인 안전보건관리비를 제안하는 연구를 했으며, 현행보다 다소 상향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안된 요율은 현행보다 최소 4%에서 최대 50%까지 상향된 것으로, 현재의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연구에서는 모두 현재의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며 좀 더 요율을 상향조정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럽조사에 따르면 현행 기준보다 더 낮은 금액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3]. 예를 들어 Table 2에 의하면 평균 79%의 현장이 법정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Number of sites that did not comply safety and health expense estimation rule for construction projects (Gallup 2012)

ProjectAmount (Billion Won)	Num. of site surveyed	Not complied	Violation rate
Less than 0.1	219	123	56%
Between 0.1 and 0.3	140	102	73%
Between 0.3 and 2	254	218	86%
Between 2 and 12	190	167	88%
Between 12 and 80	133	127	95%
Between 80 and 150	44	41	93%
More than 150	30	22	73%
Total	1010	800	79%

즉 5개 현장 중 4군데가 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기준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원가통계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 완성공사원가통계상의 안전보건관리비

완성공사원가통계는 대한건설협회와 국가통계포털에서 매년 공개되는 자료로서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서 공사원가로 투입되는 제비용을 요소별로 집계·분석한 통계자료이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에는 13,472건, 2011년에는 13,563건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공사규모와 공사기간별로 계정과목별 원가를 공개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비 규정 준수 실태를 분석한다. 여기서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를 공사규모별로 집계하여 Table 1의 비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산정하여 원가통계상의 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해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규정이 얼마나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비율에 대해서는 편의상 일반건설공사(갑)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일반건설공사(갑)이 전체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계상요율이 일반건설공사(을)이나 중건설공사보다 낮기 때문에(Table 1 참조) 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기준은 약간 더 높을 수 있다.

Table 3. Number of completed works cost statistics 2010-2012

year	2010	2011	2012	
total	13,305	13,563	13,472	
Project amount (Billion Won)	Less than 0.5	3,462	3,214	3,003
	Between 0.5 and 3	7,028	7,553	7,318
	Between 3 and 5	1,020	950	1,049
	Between 5 and 10	768	831	957
	Between 10 and 30	580	564	735
	Between 30 and 100	331	329	292
Client type	More than 100	116	122	118
	governmental organs	938	1,229	1,326
	local government	3,987	3,296	3,171
	state-run firms	850	867	917
	public entities	533	497	459
private enterprises	6,962	7,634	7,556	

3.2 공사규모별 법정 안전보건관리비 준수율

법정 안전보건관리비와 원가통계상의 안전보건관리비의 비율을 연도별로 구해본 결과,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억 이상 공사에서는 매년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Table 4. Safety and health expense, actual expenditure vs prescribed 2010-2012

Project amount (Billion Won)	Account (thousand Won)	Year		
		2012	2011	2010
Less than 0.5	material and direct labour cost	158,256	152,986	150,776
	actual expenditure(A)	1,196	1,126	1,031
	safetyand health expense prescribed(B)	3,925	3,794	3,739
	ratio(A/B)	30%	30%	28%
Between 0.5 and 3	material and direct labour cost	414,161	383,887	369,840
	actual expenditure(A)	3,228	3,228	3,266
	safetyand health expense prescribed(B)	10,790	10,242	9,988
	ratio(A/B)	30%	32%	33%
Between 3 and 5	material and direct labour cost	943,843	875,754	827,097
	actual expenditure(A)	12,715	11,236	11,208
	safetyand health expense prescribed(B)	20,378	19,145	18,264
	ratio(A/B)	62%	59%	61%
Between 5 and 10	material and direct labour cost	1,481,420	1,365,823	1,411,679
	actual expenditure(A)	22,992	20,966	19,202
	safetyand health expense prescribed(B)	27,851	25,677	26,540
	ratio(A/B)	83%	82%	72%
Between 10 and 30	material and direct labour cost	3,641,330	3,724,353	3,804,084
	actual expenditure(A)	42,406	43,152	43,963
	safetyand health expense prescribed(B)	68,457	70,018	71,517
	ratio(A/B)	62%	62%	61%
Between 30 and 100	material and direct labour cost	13,049,687	14,026,596	15,887,751
	actual expenditure(A)	127,209	138,386	137,606
	safetyand health expense prescribed(B)	245,334	263,700	298,690
	ratio(A/B)	52%	52%	46%
More than 100	material and direct labour cost	46,199,964	54,421,922	49,761,197
	actual expenditure(A)	468,545	501,161	336,460
	safety and health expense prescribed(B)	868,559	1,023,132	935,511
	ratio(A/B)	54%	49%	36%

그 이하의 규모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법정 안전보건관리비를 30%에서 80% 사이만 반영하고 있어 관련 기준의 미준수 실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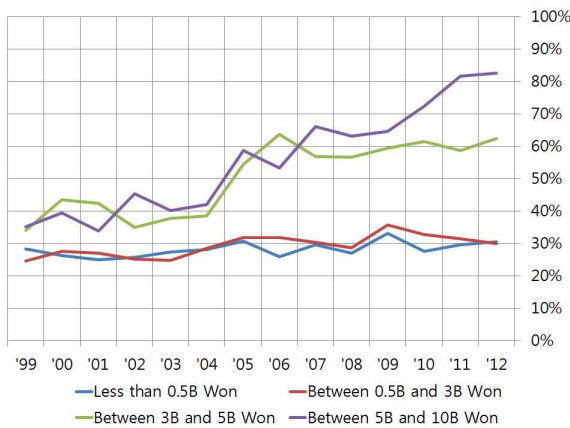


Figure 1. Annual trend of safety and health expense expenses (actual expense/prescribed)

지난 2010년에서 2012년의 3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등의 구간으로 나누어 해당 구간별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계정 금액의 합을 대상액으로 하여 기준비율을 적용하면 법정 안전보건관리비(B)를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실제 원가통계상의 안전보건관리비(A)와 비교하면 Table 4와 같이 법정 안전보건관리비 준수율(A/B)를 산정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비 준수율은 공사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3개년 간 최소 28%에서 최대 83%로 평균적으로 51% 정도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수가 법정 기준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상기준의 적용기준을 감안하면 Table 4에 나타난 실제 사용액과 법정기준과의 비율은 더 낮을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정 안전보건관리비 준수율은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의 미준수 비율이 Table 4

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의 법정 안전보건관리비의 준수율은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저 29%와 최고 79% 사이로 나타났다. 소규모 공사일수록 법정 안전보건관리비의 준수율은 낮았으며, 50억에서 100억 사이에서는 79%로 가장 높았으나, 공사규모가 100억 이상이 되면 다시 준수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Safety and health expense status 2010-2012 (actual expense/prescribed)

Project amount (Billion Won)	Health and safety expense ratio, actual vs prescribed (2010-2012, average)
Less than 0.5	29%
Between 0.5 and 3	31%
Between 3 and 5	61%
Between 5 and 10	79%
Between 10 and 30	62%
Between 30 and 100	50%
More than 100	46%

3.3 발주기관별 법정 안전보건관리비 준수율

법정 안전보건관리비 준수율을 발주기관 유형별로 비교하면,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2010년과 2012년 사이 평균 57%로 민간공사 49%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공공발주공사를 기관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95%로 가장 높았을 뿐,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체, 공공단체 등은 오히려 민간공사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공공단체가 39%로 가장 낮아 오히려 민간발주공사의 준수율 49%보다도 현저히 저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012년의 준수율이 148%이었지만, 2010년의 경우 32%에 불과해 결코 준수율이 양호하다

고 볼 수 없다. 즉 공공발주공사의 경우에도 민간발주공사보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준수율이 양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4 발주기관별 공사규모별 준수율

발주기관별 법정 안전보건관리비 준수율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이를 공사규모별 및 연도별로 분류하면 Table 7과 같다. 전체적으로 법정 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이상 반영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가 가장 많아 30억 이상 50억 미만 공사와 5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 300억 이상 1000억 미만 공사(2011년) 등이 해당된다. 국영기업체 발주의 30억 이상 50억 미만 공사(2012년)와 5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2011년, 2012년), 공공단체 발주의 5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2011년)에서 100% 이상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기관 발주와 민간 발주 공사의 경우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이상 반영한 것으로 집계된 경우가 없어 대부분의 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민간발주뿐 아니라 국가기관 발주 공사에서도 마저도 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의 경우로, 법정 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20% 미만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억 이상 규모의 민간 발주 공사의 경우 법정 기준의 평균 48%에서 62% 사이로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 발주공사의 48%~63%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규모 공사에서는 공공발주 공사보다 민간발주 공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지만 규모가 큰 공사에

Table 6. Safety and health expense status 2010-2012 of varying client types (actual expense/prescribed)

Client type	Factors	Year			Total	
		2010	2011	2012		
Public sector	governmental organs	actual expenditure(A)	551,569	258,604	306,158	1,116,331
		prescribed(B)	799,311	747,227	910,127	2,456,665
		ratio(A/B)	69%	35%	34%	45%
	local government	actual expenditure(A)	276,101	1,004,689	1,418,527	2,699,317
		prescribed(B)	861,185	1,027,611	959,008	2,847,804
		ratio(A/B)	32%	98%	148%	95%
state-run firms	actual expenditure(A)	380,439	810,713	461,857	1,653,009	
	prescribed(B)	982,135	1,331,175	1,146,498	3,459,809	
	ratio(A/B)	39%	61%	40%	48%	
public entities	actual expenditure(A)	266,974	502,620	302,630	1,072,224	
	prescribed(B)	440,802	1,162,589	1,143,861	2,747,251	
	ratio(A/B)	61%	43%	26%	39%	
private enterprises	actual expenditure(A)	621,919	694,515	810,852	2,127,286	
	prescribed(B)	1,534,036	1,472,606	1,368,588	4,375,230	
	ratio(A/B)	41%	47%	59%	49%	

서는 공공발주 공사와 민간발주 공사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공공발주 및 민간발주 모두 평균적으로 법정 기준보다 훨씬 적게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고 있었다.

Table 7. Safety and health expense status 2010-2012 of varying client types and project amount (actual expense/prescribed)

Project amount (Billion Won)	Client type	year		
		2010	2011	2012
Less than 0.5	governmental organs	62%	64%	50%
	local government	61%	61%	59%
	state-run firms	36%	56%	58%
	public entities	41%	46%	56%
	private enterprises	12%	15%	16%
Between 0.5 and 3	governmental organs	59%	47%	53%
	local government	57%	61%	61%
	state-run firms	60%	63%	57%
	public entities	51%	53%	57%
	private enterprises	16%	17%	17%
Between 3 and 5	governmental organs	86%	62%	74%
	local government	104%	116%	120%
	state-run firms	87%	87%	102%
	public entities	67%	68%	79%
	private enterprises	27%	28%	32%
Between 5 and 10	governmental organs	67%	97%	96%
	local government	118%	133%	169%
	state-run firms	58%	101%	108%
	public entities	68%	110%	62%
	private enterprises	56%	47%	45%
Between 10 and 30	governmental organs	50%	41%	60%
	local government	66%	68%	85%
	state-run firms	49%	56%	72%
	public entities	90%	60%	58%
	private enterprises	65%	68%	53%
Between 30 and 100	governmental organs	41%	56%	37%
	local government	31%	115%	44%
	state-run firms	30%	54%	50%
	public entities	53%	27%	42%
	private enterprises	52%	48%	62%
More than 100	governmental organs	89%	18%	24%
	local government	21%	94%	187%
	state-run firms	39%	62%	30%
	public entities	-	44%	14%
	private enterprises	36%	47%	61%

4. 안전보건관리비 준수율 분석

현행 규정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5].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음). 또한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건설공사에 새로운 공법과 재료가 채택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 또한 복잡해져서 이를 확인하는 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어 실질적인 확인이 어렵다. 또한 다양해진 기술로 인해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안전보건관리비가 공공발주공사에서는 규정의 57%, 민간발주공사에서 규정의 49% 사용에 불과하다는 것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발주자, 감리원, 관계 공무원 등의 사용내역 확인이 소홀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실제로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00억 이상 공사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37.19%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연구는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의 준수실태를 살펴 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완성공사원가통계의 계정과목에 대해 발주자유형 및 공사규모별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의 준수율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완성공사원가통계상의 안전보건관리비 준수율의 연도별 추세를 구한 결과 30억 이상 공사에서는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규모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억 이상 공사에서도 법정 안전보건관리비를 80% 사이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규모별로 안전보건관리비 준수율을 분석한 결과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3개 년 간 최소 28%에서 최대 83%로, 평균적으로 법정 기준의 51% 정도만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공사금액 50억에서 100억 사이 공사에서는 79%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상과 미만 규모에서는 준수율이 낮아졌다.

발주기관별로 보면 2010년과 2012년 사이 공공발주 공사가 평균 57%로 민간공사 49%보다 다소 높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95%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기관에서는 민간공사 평균보다 낮았다. 즉 공공발주 공사가 민간발주공사보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준수율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었다.

국내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그 미준수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에서 최소한의 법적 기준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순한 홍보나 격려 등에 의한 자율안전의 강조보다는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준수율이 매우 저조함을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향후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요율분석 및 준수를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에 제정된 이래 건설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그나마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의 준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공사원가통계에서 집계된 원가비율을 공사규모와 발주자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수율이 발주자 유형별로 볼 때 대부분의 유형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키워드 : 안전관리, 건설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References

1. Oh SW, Kim YS, Choi SH, Choi JW.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 Rate by Safety Environment Change in Construciton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13 Jul;14(4):97-107.
2. Oh SW. Investigation of Statu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 Management and Apporpriation Premium Rate for Construction Industry. Incheon: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2 Nov. 105p. Report No.:2012-연구원-1159.
3. Park BI.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rvey: In-depth Analysis Report. Incheon: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2 Nov. 403p. Report No.:2013-연구원-949.
4.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tice No. 2012-126 [Interne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2012 Nov. Available from:<http://www.moel.go.kr/policyinfo/>.
5.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Notice No. 2013-47 [Internet]: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2013 Oct. Available from:<http://www.moel.go.kr/>.
6. Jung KT. Developing Criteria for Standard Safety Management Cost. Korea Industrial Safety Corporation, 1997. 51 p.
7. Jung KT. A Study on the Optimal Construction Cost for Safety Construction. Korea Industrial Safety Corporation, 1997. 124 p.
8. Kim JK. A Study on the Appropriate Rate of Standard Safety Management Cost for Construction Work.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1999. 48 p.
9. Son KS, Gal WM, Yang HS. A Study on the Estimating Rate of Safety Management Cost in Building Work. Journal of the KOSOS. 2007 Sep ;22(5):33-40.
10. Son KS, Lee GT, Park JK, Park JB. Appropriate Rate for Estimating Safety Management Cost in Civil Wor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2006 Jun ;21(4):73-84.
11. Son KS. Establishing Appropriate Rate for Standard Safety & Health Management Cost.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05.
12. Lee MG. The Way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Operating System.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09.